

평창군읍·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0년12월 29일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0.12. 19, 평창군수(환경복지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0.12.26.
- 다. 상정일자
 - 제82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조례특위(2000.12.26)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환경복지과장 신만희)

가. 제 안 이 유

- 복지회관 확대와 감사등 운영사항을 구체화하여 관리하고자 함.

나. 주 요 골 자

- 도암면 복지회관 : 도암면청사, 마을공회당 일부
- 지도업무 횡수조정 : 연2회 ⇒ 연1회
- 감사내용 구체화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본조례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에 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을 목적

으로 하는 조례임.

- 도암면 청사 일부와 마을공회당을 복지회관으로 편입,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과 아울러 본 조례의 제25조인 지도감독의 횡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줄이되 감사내용을 세분화·명문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기타 법령형식·자구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○ 복지회관 조례에 편입시키는 이유는?	○ 사용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5. 토 론 요 지

- 본 건물은 당초 면사무소 회의실 용도로 건축된 건물로서 이를 단순 사용료를 부과와 종합 복지회관 용도가 아님에도 복지회관에 편입시키는 것은 차후 지역발전에 문제가 될 수 있음.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읍·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
조례안 10부

평창군읍·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읍·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[별표 1] 번호·회관명 및 위치중 4번 다음에 5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	도암면 종합복지회관	평창군 도암면 횡계리335외3 (도암면청사중 일부), 324-1
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25조제1항중 “ 연2회” 를 “ 연1회” 로 한다.

제25조제2항중 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” 를 “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” 로 하고 다음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회관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
2. 회관운영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의 감사요구가 있고 그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
3. 기타 운영상의 문제가 있음이 현저히 나타날 때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